

대구지방법원 2023. 5. 11 선고 2022나327067(본소), 2022나327074(반소) 판결 [계약금반환
청구의 소 · 손해배상(기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

담당변호사 장세훈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3. 4. 13.

판 결 선 고 2023. 5. 11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9. 29. 선고 2021가단103530(본소),

2021가단1399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17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원고: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: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4쪽 위에서 일곱째 줄의 “증인 J, K의 각 증언”을 “제1심 증인 J, K의 각 증언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6쪽 첫째 줄의 “것이므로,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다만,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철거하는 데 협조하고 철거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나, 원고가 E의 담당자로부터 ‘이 사건 기계설비의 철거는 하도급의 대상이 아니어서 F이 이를 해야 하고 원고가 철거할 수 없다’고 통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았을 때 그 무렵 피고 또한 그 비용으로써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철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 것으로 보이며, 이후 피고는 철거된 이

사건 기계설비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바,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그 전부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,』

○ 제1심판결 제6쪽 위에서 아홉째 줄부터 열두째 줄의 “인정된다.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짚순이 2대를 반환하여야 하나,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짚순이 2대를 인도받은 뒤 위 기계가 분실된 상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런데 이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의 목적물 가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14675 판결 등 참조),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짚순이 1대의 시가가 8,8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“의무가 있다.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,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L가 원고에게 ‘짚순이를 원고 공장에 보관한 뒤에 이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50,000,000원을 돌려주겠다’고 하면서 위 짚순이 2대를 원고의 공장에 보관시켜 두었다가 이를 다시 회수해간 것일 뿐, 피고로부터 위 짚순이 2대를 전달받거나 피고와 위 짚순이 2대의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,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짚순이 2대에 대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,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50,000,000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17,600,000원 상당의 짚순이 2대를 인도해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같은 이유에서 위 짚순이 2대를 인도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,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배상 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.』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각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정주희, 판사 유진홍